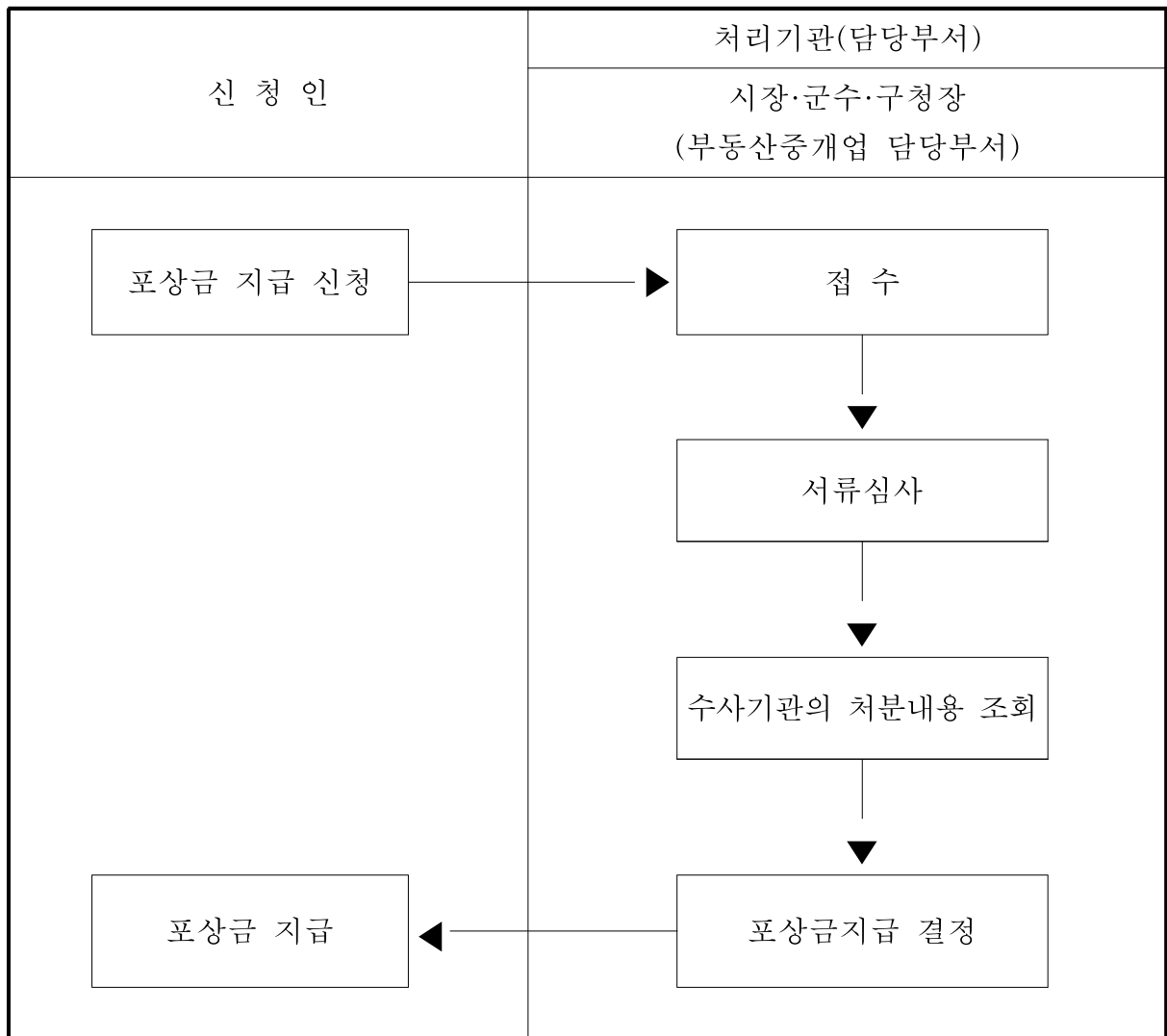
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포상금 안내

- 포상금은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무등록 중개업자, 등록중 양도·대여자 등)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, 동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
- 따라서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,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